

이창한 / 6월 / 실전 GS B형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3354	20.5	14	19.5	12	66	1	0.27%	370
541483	18.5	13.5	18.5	13	63.5	2	0.54%	
541509	16.5	13.5	20.5	12.5	63	3	0.81%	
541491	18	13.5	18.5	12.5	62.5	4	1.08%	
541477	18	12.5	19	12.5	62	5	1.35%	
541490	18	13.5	17.5	13	62	5	1.35%	
541565	19	13	18.5	10.5	61	7	1.89%	
541334	17	11.5	19.5	12.5	60.5	8	2.16%	
544340	19	12	16.5	12.5	60	9	2.43%	
544754	17.5	14	17	11	59.5	10	2.70%	
541461	15	13.5	19.5	11	59	11	2.97%	
541514	18	12.5	16.5	11.5	58.5	12	3.24%	
543226	13.5	13	20	12	58.5	12	3.24%	
544350	15	14	18	11.5	58.5	12	3.24%	
541342	15	12	19	12	58	15	4.05%	
544486	18	11.5	20	8.5	58	15	4.05%	
541497	20.5	11	14	12	57.5	17	4.59%	
541579	16	13	18	10.5	57.5	17	4.59%	
541457	14.5	10.5	19.5	12.5	57	19	5.14%	
541481	16	13	15.5	12.5	57	19	5.14%	
541551	15	13.5	16.5	12	57	19	5.14%	
541558	16.5	12	16.5	12	57	19	5.14%	
544402	21.5	14	21.5	0	57	19	5.14%	
543264	16	11.5	17	12.5	57	19	5.14%	
544525	15.5	12	18	11.5	57	19	5.14%	
541326	16.5	13	14.5	12.5	56.5	26	7.03%	
541495	15.5	10	19	12	56.5	26	7.03%	
541585	16	13.5	17.5	9.5	56.5	26	7.03%	
543307	16.5	9.5	18.5	12	56.5	26	7.03%	
541465	15.5	11	16.5	13	56	30	8.11%	
541468	17.5	10	17	11.5	56	30	8.11%	
541554	16.5	12	15.5	12	56	30	8.11%	
541557	15.5	13	19	8.5	56	30	8.11%	
544479	17.5	13	15	10.5	56	30	8.11%	
543221	17	10.5	16.5	12	56	30	8.11%	
544373	15	10.5	18.5	12	56	30	8.11%	
541511	13	13	18	11.5	55.5	37	10.00%	
541581	14	13.5	17	11	55.5	37	10.00%	
543781	17	12	16	10.5	55.5	37	10.00%	
544843	16	13.5	14	12	55.5	37	10.00%	
541447	14	10.5	18.5	12	55	41	11.08%	
543302	16	12	15	11.5	54.5	42	11.35%	
544796	17	10.5	15.5	11.5	54.5	42	11.35%	
541507	14.5	11.5	17.5	10.5	54	44	11.89%	
543194	15.5	11	15.5	12	54	44	11.89%	
543346	17	12	13.5	11.5	54	44	11.89%	
541516	17	9.5	16.5	10.5	53.5	47	12.70%	
544751	16	13.5	17.5	6.5	53.5	47	12.70%	
543465	16	12	17	8	53	49	13.24%	
544461	18	9.5	15.5	10	53	49	13.24%	
543681	14	12.5	16	10.5	53	49	13.24%	
543713	13	12.5	15	12.5	53	49	13.24%	
544503	15	9.5	17	11.5	53	49	13.24%	
544708	15.5	9.5	16.5	11.5	53	49	13.24%	

544760	16.5	10.5	16.5	9.5	53	49	13.24%
541473	15.5	9	19	9	52.5	56	15.14%
541600	14.5	10	19	9	52.5	56	15.14%
543978	13.5	10.5	18	10.5	52.5	56	15.14%
529059	15	13	15.5	8.5	52	59	15.95%
541441	16.5	10.5	15	10	52	59	15.95%
541471	14	12	17	9	52	59	15.95%
541595	13	12	17	10	52	59	15.95%
541433	13	10.5	16	12	51.5	63	17.03%
541464	19	7	15.5	10	51.5	63	17.03%
541522	16	13	11	11.5	51.5	63	17.03%
544113	12.5	11	16.5	11.5	51.5	63	17.03%
544788	16.5	11.5	14	9.5	51.5	63	17.03%
544389	14.5	11.5	13	12.5	51.5	63	17.03%
544433	14.5	11	17.5	8.5	51.5	63	17.03%
544520	14.5	12.5	14	10.5	51.5	63	17.03%
544522	13.5	9.5	16.5	12	51.5	63	17.03%
544392	17	12.5	14.5	7.5	51.5	63	17.03%
528949	14.5	11.5	17	8	51	73	19.73%
529402	16	11	17	7	51	73	19.73%
535969	15.5	13	12	10.5	51	73	19.73%
541340	16	10.5	14.5	10	51	73	19.73%
541571	14	10.5	15.5	11	51	73	19.73%
535491	13.5	9	18	10.5	51	73	19.73%
543304	16.5	10.5	14	10	51	73	19.73%
544441	13.5	12.5	14.5	10.5	51	73	19.73%
544915	15.5	11.5	16	8	51	73	19.73%
541575	16.5	10	13	11	50.5	82	22.16%
543192	16	10.5	14	10	50.5	82	22.16%
543209	16.5	9.5	14.5	10	50.5	82	22.16%
541463	13.5	12.5	13.5	10.5	50	85	22.97%
541506	15.5	12	14	8.5	50	85	22.97%
541594	15	10	16	9	50	85	22.97%
541605	13.5	10	15.5	11	50	85	22.97%
544533	15	11	14	10	50	85	22.97%
544715	14	12.5	13	10.5	50	85	22.97%
543207	12	12	16	9.5	49.5	91	24.59%
544079	14	13.5	13.5	8.5	49.5	91	24.59%
540936	13.5	9.5	15.5	10.5	49	93	25.14%
541521	16	11	14	8	49	93	25.14%
541607	12	8.5	17.5	11	49	93	25.14%
543643	10	11	17.5	10.5	49	93	25.14%
529237	12	10	17	9.5	48.5	97	26.22%
541484	14	9	13	12.5	48.5	97	26.22%
541502	14.5	11.5	15	7.5	48.5	97	26.22%
541504	13.5	11.5	13	10.5	48.5	97	26.22%
541540	11.5	11	16	10	48.5	97	26.22%
541599	11.5	12.5	15.5	9	48.5	97	26.22%
535470	17	6.5	14.5	10.5	48.5	97	26.22%
543762	16.5	13.5	17	1.5	48.5	97	26.22%
541350	14.5	13	12.5	8	48	105	28.38%
541518	15	10	14.5	8.5	48	105	28.38%
541524	13	12	17	6	48	105	28.38%
541541	11.5	8.5	18	10	48	105	28.38%
541552	14	10	13.5	10.5	48	105	28.38%
541614	13.5	10	14	10.5	48	105	28.38%
543265	11	11	16	10	48	105	28.38%

544859	12.5	14	13	8.5	48	105	28.38%
543624	14.5	11	16.5	6	48	105	28.38%
541336	15.5	11	11.5	9.5	47.5	114	30.81%
541337	12.5	10	13.5	11.5	47.5	114	30.81%
541508	14	10.5	14	9	47.5	114	30.81%
541573	15.5	11.5	17	3.5	47.5	114	30.81%
543227	14	8	15.5	10	47.5	114	30.81%
544539	12	12.5	15.5	7.5	47.5	114	30.81%
544761	14.5	8.5	13.5	11	47.5	114	30.81%
540945	14	10.5	14	9	47.5	114	30.81%
544459	14	11	14	8.5	47.5	114	30.81%
540837	12.5	10.5	17	7	47	123	33.24%
543464	14	9.5	12.5	11	47	123	33.24%
544718	12	11	15.5	8.5	47	123	33.24%
543379	10	10.5	18	8.5	47	123	33.24%
543654	18	9.5	15.5	4	47	123	33.24%
544721	14.5	9.5	14.5	8.5	47	123	33.24%
544096	10.5	12	16	8.5	47	123	33.24%
541338	12.5	9	17.5	7.5	46.5	130	35.14%
541459	12	9.5	15	10	46.5	130	35.14%
543930	11.5	9.5	15.5	10	46.5	130	35.14%
544131	11	10	17.5	8	46.5	130	35.14%
544704	10	11	13	12.5	46.5	130	35.14%
528944	12.5	11	15.5	7	46	135	36.49%
529165	11	6	17.5	11.5	46	135	36.49%
541333	13	11	16	6	46	135	36.49%
541445	14	9.5	14.5	8	46	135	36.49%
541781	14	12	10.5	9.5	46	135	36.49%
543828	14	9	12.5	10.5	46	135	36.49%
544031	10	11.5	14.5	10	46	135	36.49%
544123	11	12	15.5	7.5	46	135	36.49%
544396	11.5	13.5	16.5	4.5	46	135	36.49%
544789	14.5	10	12	9.5	46	135	36.49%
544672	12.5	10	14	9.5	46	135	36.49%
541589	13.5	10	15	7	45.5	146	39.46%
544552	14.5	10	13	8	45.5	146	39.46%
541453	13	11	13	8	45	148	40.00%
541462	10.5	9	18.5	7	45	148	40.00%
541542	8.5	12	15	9.5	45	148	40.00%
544372	14.5	8.5	15.5	6.5	45	148	40.00%
544776	16.5	9	12.5	7	45	148	40.00%
544780	11.5	10	17	6.5	45	148	40.00%
540849	11.5	11.5	13	8.5	44.5	154	41.62%
541345	13.5	11	12	8	44.5	154	41.62%
541437	12	11.5	13	8	44.5	154	41.62%
541527	12.5	6.5	17	8.5	44.5	154	41.62%
544494	14.5	10.5	14	5.5	44.5	154	41.62%
544415	14.5	9.5	13	7.5	44.5	154	41.62%
544745	15.5	11	18	0	44.5	154	41.62%
541430	10.5	8	16	9.5	44	161	43.51%
541568	10.5	11	14.5	8	44	161	43.51%
543167	11.5	13	11.5	8	44	161	43.51%
544762	15	9	15	5	44	161	43.51%
543197	9	11	14	9.5	43.5	165	44.59%
543224	13	10.5	13.5	6.5	43.5	165	44.59%
545371	14.5	0	19.5	9.5	43.5	165	44.59%
543352	12	6	15.5	10	43.5	165	44.59%

544513	11	9.5	16	7	43.5	165	44.59%
544741	10.5	9	15.5	8.5	43.5	165	44.59%
540807	12	8.5	14.5	8	43	171	46.22%
541448	10.5	11.5	14	7	43	171	46.22%
541451	16	4.5	14	8.5	43	171	46.22%
541570	9.5	10	15.5	8	43	171	46.22%
541593	14.5	8	14	6.5	43	171	46.22%
543277	13.5	8.5	14	7	43	171	46.22%
544646	11.5	10	14	7.5	43	171	46.22%
544749	15	10.5	11	6.5	43	171	46.22%
543198	12	9.5	13.5	8	43	171	46.22%
544099	10	9	13	11	43	171	46.22%
541324	10.5	8.5	15	8.5	42.5	181	48.92%
541493	12	10.5	12	8	42.5	181	48.92%
543147	12	10	13.5	7	42.5	181	48.92%
543191	15.5	7	10.5	9.5	42.5	181	48.92%
544714	10.5	10.5	15.5	6	42.5	181	48.92%
535258	7.5	6	17	11.5	42	186	50.27%
540804	14.5	6.5	14.5	6.5	42	186	50.27%
540848	12.5	10	12.5	7	42	186	50.27%
541435	11.5	10	11.5	9	42	186	50.27%
543288	12	10.5	13.5	6	42	186	50.27%
544121	12.5	8	16	5.5	42	186	50.27%
544779	11	9.5	13	8.5	42	186	50.27%
543306	12	7	14	8.5	41.5	193	52.16%
544481	10	8.5	14	9	41.5	193	52.16%
544011	13	10	14	4.5	41.5	193	52.16%
543820	8.5	14.5	12.5	6	41.5	193	52.16%
541458	9	12.5	15	4.5	41	197	53.24%
543341	15	9.5	9.5	7	41	197	53.24%
543715	9.5	11	14	6.5	41	197	53.24%
544769	11	11.5	13	5.5	41	197	53.24%
543284	10.5	13.5	17	0	41	197	53.24%
544908	9	8	14	10	41	197	53.24%
541332	13.5	12.5	7.5	7	40.5	203	54.86%
541611	11	10	12.5	7	40.5	203	54.86%
541335	5.5	12	15	7.5	40	205	55.41%
543349	11	7	14	8	40	205	55.41%
543897	10.5	7.5	14.5	7.5	40	205	55.41%
540882	12.5	7	12	8	39.5	208	56.22%
541460	15.5	7	12.5	4.5	39.5	208	56.22%
541466	9	8.5	15.5	6.5	39.5	208	56.22%
541523	10.5	7	16	6	39.5	208	56.22%
541702	12.5	6.5	14.5	6	39.5	208	56.22%
544697	10	8.5	12	9	39.5	208	56.22%
544508	11.5	9	13	5.5	39	214	57.84%
529014	7.5	8.5	17.5	5	38.5	215	58.11%
540789	10.5	5	20.5	2.5	38.5	215	58.11%
541434	10	12	8.5	8	38.5	215	58.11%
544437	11.5	7.5	13	6.5	38.5	215	58.11%
544528	11	11	8.5	8	38.5	215	58.11%
544865	9.5	6.5	12.5	10	38.5	215	58.11%
544786	8	0	19.5	11	38.5	215	58.11%
541485	12	3.5	13	9.5	38	222	60.00%
543312	11	12.5	12	2.5	38	222	60.00%
544474	11.5	12	14.5	0	38	222	60.00%
544926	14.5	11.5	6.5	5.5	38	222	60.00%

544749	11	10	13.5	3	37.5	226	61.08%
544314	10	8.5	14	5	37.5	226	61.08%
544317	12.5	8	11	6	37.5	226	61.08%
544698	9.5	9.5	13.5	5	37.5	226	61.08%
541329	10	8	12.5	6.5	37	230	62.16%
541544	9.5	8	13.5	6	37	230	62.16%
541555	5	11	13	8	37	230	62.16%
544812	4	11.5	14.5	7	37	230	62.16%
541431	13.5	7.5	7.5	8	36.5	234	63.24%
544817	10.5	9	11	6	36.5	234	63.24%
544863	12	4	10.5	10	36.5	234	63.24%
535319	14	3	10	9	36	237	64.05%
535345	5	10	10.5	10.5	36	237	64.05%
541438	9.5	5	14	7.5	36	237	64.05%
541546	5.5	11	13	6.5	36	237	64.05%
541548	5.5	7.5	12.5	10.5	36	237	64.05%
543232	9.5	7.5	13	6	36	237	64.05%
543251	13	7	14	2	36	237	64.05%
543500	7.5	9.5	13	6	36	237	64.05%
544024	9	9.5	11	6.5	36	237	64.05%
544078	9	9	9	9	36	237	64.05%
535211	5	4.5	16	10	35.5	247	66.76%
535412	8.5	7	12.5	7.5	35.5	247	66.76%
540856	9	7	11.5	8	35.5	247	66.76%
544071	8	8	13.5	6	35.5	247	66.76%
535244	18	0.5	12.5	4	35	251	67.84%
540885	11	7.5	12.5	4	35	251	67.84%
541472	7.5	6	15.5	6	35	251	67.84%
111111	11.5	6	10.5	6.5	34.5	254	68.65%
529129	12	7.5	9.5	5.5	34.5	254	68.65%
541341	11.5	7	12.5	3.5	34.5	254	68.65%
544060	9.5	7.5	12	5.5	34.5	254	68.65%
535192	11.5	5	11	6.5	34	258	69.73%
541442	11	3.5	11	8.5	34	258	69.73%
541444	12	8	12	2	34	258	69.73%
541499	4.5	11	12.5	6	34	258	69.73%
543222	12.5	10	11.5	0	34	258	69.73%
544440	9.5	7	12.5	5	34	258	69.73%
535316	11.5	5.5	12.5	4	33.5	264	71.35%
540862	7.5	7.5	13	5.5	33.5	264	71.35%
544538	11	5	9.5	8	33.5	264	71.35%
544020	7.5	11	11.5	3.5	33.5	264	71.35%
541443	8	4	13.5	7.5	33	268	72.43%
541584	7	7	14	5	33	268	72.43%
544038	8.5	6	11.5	7	33	268	72.43%
544367	6	5.5	15.5	6	33	268	72.43%
543878	6.5	9	11.5	6	33	268	72.43%
544378	10.5	6	12.5	3.5	32.5	273	73.78%
541602	3.5	10.5	14.5	3.5	32	274	74.05%
543214	6.5	7	14	4.5	32	274	74.05%
544436	6.5	11	10.5	4	32	274	74.05%
544590	11	3.5	11	6.5	32	274	74.05%
543983	12	7.5	9	3.5	32	274	74.05%
544828	9	6.5	13.5	3	32	274	74.05%
541577	9.5	3.5	13.5	5	31.5	280	75.68%
543826	13	6.5	12	0	31.5	280	75.68%
540791	15	2.5	7	6.5	31	282	76.22%

541580	10.5	7.5	8	5	31	282	76.22%
541582	7.5	9.5	10	4	31	282	76.22%
541608	11	7.5	10.5	2	31	282	76.22%
543301	12.5	6.5	12	0	31	282	76.22%
540802	14.5	6	5.5	4.5	30.5	287	77.57%
543377	7	9	10.5	4	30.5	287	77.57%
540798	13.5	12	4.5	0	30	289	78.11%
541327	6	7	13.5	3.5	30	289	78.11%
541545	8	8.5	13.5	0	30	289	78.11%
543258	8	7	10	5	30	289	78.11%
543626	11	4.5	9.5	5	30	289	78.11%
535321	14.5	0	9.5	5.5	29.5	294	79.46%
540810	10	4	9	6.5	29.5	294	79.46%
540835	5.5	8.5	11.5	4	29.5	294	79.46%
541610	7	6	10.5	6	29.5	294	79.46%
543313	12	6.5	8	3	29.5	294	79.46%
544336	11.5	6	7.5	4.5	29.5	294	79.46%
540926	10.5	6.5	9	2.5	28.5	300	81.08%
541535	4.5	10.5	10	3.5	28.5	300	81.08%
543660	7	6.5	14.5	0.5	28.5	300	81.08%
544393	5.5	8	12	2.5	28	303	81.89%
543311	12	4	9	3	28	303	81.89%
541503	8.5	6	7.5	5.5	27.5	305	82.43%
541538	5	4	12.5	6	27.5	305	82.43%
543280	11.5	0	13.5	2.5	27.5	305	82.43%
535239	11	10.5	5.5	0	27	308	83.24%
540869	7	7	9	4	27	308	83.24%
541506	10.5	5.5	7	4	27	308	83.24%
541543	7.5	4.5	8	7	27	308	83.24%
543612	9	5	9	4	27	308	83.24%
541343	7	9	9	1.5	26.5	313	84.59%
543201	7	4	12	3.5	26.5	313	84.59%
540933	9	5	7	5	26	315	85.14%
541347	14.5	0	8.5	3	26	315	85.14%
541530	7	4.5	10	4.5	26	315	85.14%
544057	9.5	4.5	8.5	3.5	26	315	85.14%
544480	9.5	7	3.5	6	26	315	85.14%
535329	6	6.5	8	5	25.5	320	86.49%
535647	10	3.5	6.5	5.5	25.5	320	86.49%
541467	8.5	7	9	1	25.5	320	86.49%
541479	10.5	1.5	10	3.5	25.5	320	86.49%
543323	6.5	10	6.5	2.5	25.5	320	86.49%
544061	6	8	8.5	3	25.5	320	86.49%
544551	8	3	9	5.5	25.5	320	86.49%
543390	12	12.5	1	0	25.5	320	86.49%
529016	14.5	4.5	6	0	25	328	88.65%
535617	6.5	4.5	10	4	25	328	88.65%
540793	10.5	2.5	7.5	4.5	25	328	88.65%
540881	8.5	4.5	9	3	25	328	88.65%
540794	12.5	4	7	1	24.5	332	89.73%
540800	6	0	13	5.5	24.5	332	89.73%
541526	6	5.5	7	6	24.5	332	89.73%
541583	6	6	9	3.5	24.5	332	89.73%
543248	7	3	11	3.5	24.5	332	89.73%
540809	5.5	4	11.5	3	24	337	91.08%
540813	9	6.5	8.5	0	24	337	91.08%
541519	10	3	7	4	24	337	91.08%

543256	3.5	5	8	7	23.5	340	91.89%
541489	8	5	9.5	0.5	23	341	92.16%
543208	7.5	3	9.5	3	23	341	92.16%
541603	5.5	9	8	0	22.5	343	92.70%
543267	4.5	4	12	2	22.5	343	92.70%
540799	7	8	5	2	22	345	93.24%
541432	7.5	5.5	5	4	22	345	93.24%
541604	2	5.5	8	6	21.5	347	93.78%
540921	6	2	9	4	21	348	94.05%
540790	13.5	2	5	0	20.5	349	94.32%
540839	6.5	2	7.5	4.5	20.5	349	94.32%
543357	3.5	2.5	11	3.5	20.5	349	94.32%
541486	7	4.5	7	1.5	20	352	95.14%
542308	1.5	2	12	4.5	20	352	95.14%
543614	4.5	4.5	8	3	20	352	95.14%
541474	7.5	0	12	0	19.5	355	95.95%
544537	9	3	3	4.5	19.5	355	95.95%
543314	6.5	5	7.5	0	19	357	96.49%
541498	2.5	3	10	3	18.5	358	96.76%
540792	3	2.5	10	2	17.5	359	97.03%
541534	4.5	6	6	1	17.5	359	97.03%
544293	6.5	3	5.5	2.5	17.5	359	97.03%
544452	9	1	5	2	17	362	97.84%
544737	3	2.5	8.5	3	17	362	97.84%
536108	3	3	8.5	0	14.5	364	98.38%
541501	7.5	2	4	1	14.5	364	98.38%
544554	7.5	2	5	0	14.5	364	98.38%
535325	4.5	6	3	0	13.5	367	99.19%
541597	5	1	7	0	13	368	99.46%
535255	2	0	4.5	0	6.5	369	99.73%
543499	3	0	0	0	3	370	100.00%

<문제 1>

I. 실문 1)



1. 논쟁점 - 문서 제출명령 의의라, 확대개정

당사자가 시증을 신청하더라 하는 경우 제출명령 신청할 수  
있고 (343조), 법원도 제출명령할 수 있다.

중이 92쪽 판례 시정 위하여, 일반적 제출의무로 확대  
개정하였다 (제 344조 2항)

2. 인용문서 해당 여부 및 제출 거부 사유 종류

(1) 인용문서 의의·취지

당사자가 소용머지 인용한 문서는 가지고 있는 경우 문서  
제출 거부하지 못한다 (제 344조 1항 1호) 형평상 인정한다.

(2) 인용문서 개념 취척

당사자가 반드시 자기 주장에 대한 증거로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  
보조로 삼은 문서도 해당된다.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인 경우 취척

인용문서에 해당하든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무원이 '수비서류' 있어서 문제지만, 제출 거부 사유  
아니라 본다.

(4)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든 경우 취척

인용문서에 해당하든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든 제출 거부 사유가



없어진 한다.

(5) 인용문서 등에 대해 지출 거부 사유 인정 거부

① 344조 항 1호의 인용문서나, 344조 항 2호의 인용문서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이는,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 근거로 인용했다면, 상대방도 인용한 두 가지 형이 동등하므로, 어느 쪽이든 지출하게 하는 것이다.

③ 인도 인용 문서의 경우에도, 사실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증빙 거부 사유가 유추될 바가 아니다.

④ 따라서 344조 항 1호나 344조 2항 문서라 달리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6) 사안

① 공무로 받은 문헌적 자료가 직접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음이 회의문서 문체. 내용 언급하였다.

② 증거로 인용은 안했다, '주장의 근거로 상이' 인용문서이다.

③ 이 때, 2의 주장대로 공무로 받은 문헌적 자료 관련해 보란 등 하는 근거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해도 '거부 사유 없다.'

④ 따라서, 2의 주장을 부당하고, 지출해야 하는 인용문서이다.

3. 지출명령 적법한지

(1) 지출명령 이유

법원은 문서지출신청이 정당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각종으로 문서 가변 사항이게 제출 명할 수 있으나 (제 34조  
(항)

(2) 사안

양용문서이고, 제출각부 사유 <sup>한정한</sup> 있으며, <sup>지정</sup> 업무 응징한 수행이  
초계한 만한 사항이 있어서 제출 명명한 것은 적법  
하다.

II 문(2) - 가

8.5

1. 논쟁점

○ 통화내역이 '문서' 이 해당하느라 ○ 제출명명 대상의

5  
문서인나 ○ 통비법 32 1항에 반하여 제출 각부사유  
인정 하느라 운피된다.

2. 문서에 해당하느라 여부

(1) 취소외

민소 전자 문해법이 따라 핸드폰 통화내역과 같은 통신사조

확인 자료도 전자 문서에 해당하느라, 따라서 전자 제출명명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자 문서, 문서에 해당하느라

보았다.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된 문서도 문서로 본다.

(2) 사안

통화내역도 전자 문서 이 해당하여, 이라 말리 주장하느라 S의

주장을 부당하다.

3. 제출명명 대상 해당 여부

(1) 문제점

① 2이 甲의 핸드폰 통화내역은 인접하였고, 2이 제출명령 신청을 했다. ② 이에 대해 인용문서로 볼 수 있는지, 344로 2항 문서로 봐야 하므로 문제이다.

2) 원심 취척

이를 인용문서이 해당한다는 견제로 판시하였다.

(3) 대법원 취척

판례는 상대방이 인용한 문서를 제출명령 신청한 것으로, 344로 2항의 문서이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4) 검토 및 시사

① 제출명령 신청한 甲이 아닌 2이 문건을 인출한 것으로, 인용문서로는 볼 수 없다. ② 따라서, 344로 2항 문서로 보는 대법원 입장이 타당하다.

5. 제출개사유 존부

(1) 문제점

① 통신비밀보호법 32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이 의하지 않는 것은 강행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해거나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 대화 내용, 영취 문건다」 2 규정한다.

② 이에 따라, 통배법 32조 1항으로 제출개사유 갖는지 문제된다.

(2) 관할 취척 대법원

통배법 32조 1항의 취척은 법원이 강행적인 선정한 결과는 아니라 제출명령신청 판단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1.5



있다. 보아, 제출거부사유로 보지 않는다.

(3) 기형 취재제 2유리권

동기법도 특별 규정으로, 강행 일반적 허가 대 무다한다.

따라서, 제출 거부 사유로 보아 하고, 민사소송법

'294조'의 취재 목적 항목 규정을 준용하는 한다.

(4) 검토

민소법 294조 규정을 두는 이상, 이를 허용해도 동기법

입법 취지에 반하여 않는다.

(5) 사안

동기법 3조 항목 제출거부사유가 못된다.

5. 사안 - 법원의 취

① 제출거부 사유가 없으므로, 5의 제출거부는 부당하다.

② 따라서, 5의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5가 제출 안하는 경우, '제 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한다.

III 항문 (2) - 나

4

1. 문제점

5 위의 부정행위다 양면권 동영상 파일과 사건의 사정이 해당하여, 제출명령 신청 대상인지 묻지된다.

2. 동영상 파일과 사건의 검토 대상인지 여부

## (1) 위서

증서 테이프, 사본 등이 대하여 증거의 대상이 되어,  
법원의 재판의 작용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서증으로  
볼 수 있는 한 바 있다.

## (2) 함본

① 증거로 보는 견해는 법원이 작성 보고 등 내지  
같은 서증 대상이 아닌 한 바 있다.

② 서증으로 보는 견해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비증을 하여  
서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 (3) 인부생 처리

증거 피층으로 보고, 파일 등의 내용 기재한 사본 피층  
모양하여 이를 서증으로 보고, 두 자권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판단한다.

## (4) 검토

내용이 중복되어 있거나 하나, 내용의 존재가 증명이 있는  
것으로, 증거 대상으로 볼 것이다.

## (5) 사안

부의 부경형이 관련 동영상 파일. 사본도 증거의 대상이다.

## 3. 결론

① 따라서, 문서제공명령은 무상 자제로 이유가 없다.

② 무상 자제로 이유가 없거나 증명 사항과 관계 없는 경우,  
문서제공명령신청 '각하' 한다.

<문제 2>

14

I. 모든 (1)

1. 논쟁쟁의 - 변론제에 대하여

법원은 상이이진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변론제에 하여 종결된 변론은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제 142조)

2. 변론제에 재쟁의

변론을 재개할의 의무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 재쟁 상황에 해당한다.

3. 변론제에가 이유인 경우

(1) 관건적 요건사실의 대해 증명할 기회 갖지 못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정으로 증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그 사실이 승패에 있어서 관건적 요건사실의 해당한다면 변론제에가 이유가 된다.

(2) 정당한 행사 위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법원이 정당한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리 높은 소송 절차상 위법이 드러난 경우나 같은 때, 변론제에 이유가 있다 한다.

(3)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판결이 되는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변론제에 할 의무가 있다 한다.

4. 관건적 요건사실의 대해 증명 기회 못가면 경우에서 위법한지

(1) 사실에서 요건사실 판단

① 부당이득환환 청구의 요건사실, ② 그리고 임대차보통임상 계약임신  
 요건 행사한 사실 이 항변 사실로서의 반대입장  
 요건사실이 해당하진 ③ 계약상임신 요구 가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재항변이 해당하진 사실로 요건  
 사실이다.

(2) 甲이 증거기회 못가졌다는 여부

① 2은 1은 쌍 관권에게서도 인의인 증거 액수를 다루지 않고,  
 진에게서 거합하였다. ② 2은 1은 비로소 증언하였고, 임대차  
 보통임상 계약임신 요건 행사했다. ③ 이러한 양면서도  
 제 2은 1은 변증기회 4인간 甲에게 용납되었고,  
 ④ 주장 철회 후 2 이상 반복 주장 못하진 변을 증명했다.  
 ⑤ 이후, 甲이 정당한 사유의 재항변이나 증언 기회  
 줬다, 2은 1은 이후 3회도 있었다. ⑥ 또한, 甲은  
 재항변 본인인 것임 인정했다.  
 ⑦ 이러한 사실은 보아, 甲은 재항변 사실이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정요 증명 기회 갖지 못했다.

(3) 소결

관건적 요건사실에 대해 증명기회 못 가진 경우로, 변론제계가  
 타당에도, 추가 심리 안한 것을 부적당하다.

5. 임의의무 위반이어서 위법한지

① 甲은 (2)에서 후술하듯, 2은 계약임신요건 행사했다는  
 이유로 청구 전부 기각은 주장하면서, 항소 기각은

요구하여, 주장이 부대항은 취지인의 부당하다.

② 따라서, 법원은 부대항도 취지인적 숙명했어야 하리, 생리  
현저히 조장하게 하는 사유로, 숙명유무 위반이다.

③ 따라서, 숙명유무 위반이라 변론 재개 의미가 있으므로, 변론  
중요한 것은 부적법하다.

2. 결론  
부적법하다.

II 결론(2)

1. 부당성

① 부대항으로 볼 수 있는나 관련하여 복이익변경과 함께  
판공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② 또한, 숙명유무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2. 복이익변경규정 해석

(1) 원칙

1명 판공은 복록 한도 내에서만 바꿀 수 있다 (제 415조 문단)

(2) 예외

상대방 상소, 부대항소, 원상회복 등등 등의 경우 이론  
적용이 배제된다.

3. 부대항으로 볼 수 있어서 복이익변경기 반하지 않는다

(1) 부대항은 이유, 사실

부대항은, 항소인에게 이해 제시된 결론이 편승하며



원판본을 사기에 유해하게 내는 성형이다. (제 403호)  
비행선으로 판의 입경이다.

(2) 오인.방식

① 주된 향도의 비행선입이 향도입기게 해야 하고 ② 향도성 받은  
종결 전이아야 하여 ③ 주된 향도 계속 중이아야 하고  
④ 사면으로 한다 (제 404호)

이 취해는 향도기각 구형으로 오각형, 방기형 성형이 그쳐  
하고, 쌍판본은 4 유해하게 변경하는 정육각, 정삼각 대이가  
있다면, 복대향으로 볼 수 있다 한다.

(3) 사안

① 비행선인 20이 사기에 향도 계속 중 하였다. ② 사도 문제  
있다. ③ ~~사안~~, ~~비행선~~의 인공 항구 건축 기각은  
주장하여 복대향으로 볼 수 있는데 ④ '향도기각' 구형으로  
하여 ⑤ 복대향으로 취지인어 불분명하다.

4. 식명대우 등록 (제 186호 (항))

① 등록받은 식명인라 의의 범위가 관지 않고, 식명인  
행사로 개칭이하고 한다. ② 등록받은, 식명인라 의의 인이라  
같은 한다. ③ 생상본에, 등록 개칭이면 변경주의  
본당이 기록다. 따라서, 상의 취지리 조항한 경우, 행사가  
의사이다. ④ 사안에서, 식명인 행사 있는 경우, 승재가  
명사까지 상리 취지리 조항하다. 의사이다.

5. 정본



부대항은 후거인서 증명하, 2기 마4 판단했기야 했다,  
문자로 부대항으로 보인 19 P 음도 부본 취소해 항을  
이항항도 부정명하다.

<문제-3>

19.5

I. 질문(1)

1. 논쟁점

- ① 객응응한 것으로 보여지 항도이야이 있는지,
- ② 마의 2개 대한 항구의 정구하는 항도이야이 캐성 까지 존재한다.

2. 항도이야 판단기준

(1) 항도이야 여부

하급성 판결 변경 구할 수 있는 이항이야, 남상도 방리  
시해서 인정된다.

(2) 항권

- ① 형성적 불복심은, 선형오와 원이 부거한 경우,  
상도이야 인정한다. 객응 응도이야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실정적 불복심은, 판결보다 더 유익한 판결 받든  
유 있는 실제상황의 사항이 있다면 불복 가능하다고  
본다. 객응 응도이야 상도 가능하다.
- ③ 실정심은, 원고 불복시에는 형성적 불복심, 피고 불복시  
기는 실정적 불복심 취한다.

(3) 왜서

당사자는 신청보다 더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불복 가능  
하다. 이 때 불이익한지는 주문 문구로 결정한다.

(4) 검토

실질적 불복판은 불복 결정 방식이 너무 넓고, 항소적 불복판  
이 타당하다. 결정문은 원 판 결정이 반한다.

3. 전복등한 경우 0.5

(1) 원칙

형식적 불복판에 따라 상소이해 인정하지 않는다.

(2) 예외

① 다만, 1 항구적 정합인 경우, 목적적 일부 항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소이해 인정한다. ② 이하, 자세히 검토한다.

4. 부의 2개 대한 항소 처리 -

(1) 항소이해 인정 여부 2

1) 구이론 (1원1원)

① 매개는 원인으로 이견없이 행한 경우, 양도양보 원인으로  
등소판결 하였으면, 다른 원인에 대해 등소 판결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인용' 한 것이 아니다.

② 따라서, 항소이해 인정한다.

2) 신이론

신청을 소항위로 보아서, 이견없이 신청 인용한 것  
이므로, 원인을 무엇으로 승소하였든, 불복 인정 안한다.



기) 강도 및 사안

① 성취는 강도 편이, 실무상 부담 등은 이유로 부담해.

② 귀론에 따라 甲의 2개 개한 경우가 소년적 강도  
아이므로, 항소이유 인정된다.

㉔) 항소이유구비성 판단

1) 처분권주어 여부, 귀리

당사자가 선행처리 않은 사항에 대해 재판할 수 없다.

(피 203조) 당사자 처분권 존중한다.

2) 사안

귀론에 따라 선행처리 않은 양소양보 중인 이원통이첨구원  
판단한 것으로, 부담하다. 처분권주어기 안한다.

(3) 소결

성판결 변경함하므로, 항소이유를 해야 한다.

5. 甲의 2개에 대한 항소 취기

2.5

㉕) 운제정

대위 소송 법적 성질과 항소이유 운제정함.

(2) 대위 소송 법적 성질

① 법적 소송 당사자 (원/피) 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피3채무자와  
원제로 사건의 채권 보편을 위해 대신 행사한다  
본다. ② 2개의 대위권행은, 2건의 2회 원제로 인정한다

대위권 행사 한다는 본다. ③ 생각인데, 채무자에게 대위권사  
하라 이치므로, 당연함이 타당하다.

(3) 장대왕이 어디든 소용문

채우가야 제 3 채우나기 개환 현자가 소용문이다.

(4) 사안

㉠ 매이를 원인으로 한 연결성 항구성은 피보전권자로 보는데,  
㉡ 이는 양도상모습을 이유로 인정했다.

㉢ 다만, 피보전권자는 양도상모습이 '소용문'으로, 소용문이  
아니다. ㉣ 따라서, 위시체는 "피보전권자 내리기 인정하여  
이에 대해 항도하는 것은 판결 이유 중 다듬기 따라 하라" 하여  
'항도'의 무정한다.

(5) 소결

항도'의 무정다기 (항도 항하' 해야 한다.

II 보충(2)

10.5

1. 재성 이익, 취지 0.5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성 사유 없음을 이유로 취지를 취하고,  
확정 이전 상태로 다시 복구할 것은 요구하는 선형이다.

(2) 45(2)

2. 적법 요건

0.5

㉠ 예상적부 존재 ㉡ 기간 준수 ㉢ 재성 이익 ㉣ 재성의  
당사자 부족 ㉤ 재성 사유 부당 ㉥ 보충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3. 재성 대상 적부 문제

1.5



(1) 문계명

① 편취판권은 원가 상대방이나 명의를 가양하여 무효한  
 비용의 장점을 받는 것이다. ② 편권이 유효한지  
 논쟁된다.

(2) 학보

① 유효성은, 질라<sup>관련</sup> 기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본다.  
 ② 유효성은, 위법하더라도 법적 구성성 위해 유효로 본다.

(3) 취회

편취판권 (사취판권) 도 허위인 판권인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4) 정도

① 4호 1항 3호, 11호 규정은 판권이 유효성은 존재로 본다.  
 ② 다나서, 유효하다.

(5) 사안

甲이 허위주조로 편취판권 받았는데, 유효하여, 예상적  
 있다.

4. 재심기간 문의 여부

(1) 동등 유효한지 2

① 동등 유효하다 보지 못하는, 법적 안정성 위해 기간선행  
 후인 확정시 재심. 구판결은 허용된다 본다.  
 ② 동등이 무효는 못하는, 절차적 보강 위해 기간선행  
 안하여 항소안 가능하다고 본다.

③ 특허청은 허위주조 용서증서의 경우, 용서증서는 개관상 명백한  
제관 형식이거나, 유희적인 요인, 기간 선행하여 도라해인  
제성 조 등 제이 할 수 있다 본다.

㉠ 사안에서도, 공개이 무나 용서증서 유희적인, 기간선행하여  
판결 확정되었다.

(2) 제성 기간 0.5

판결 확정인 뒤 제성 사유 존속으로 부터 30일 이내이 제이 한다.

(제 456조 1항)

(3) 사안 0.5

2025.3.17이 용서증서원 사안 존속은에, 30일 지나지 않아서,  
적용하다.

㉠ 제성이야 0.5

확정하여 존재한다.

㉠ 제성사유 주장

① 대기업이 위해 대기업 안은 경우다 같이 소용 분차  
관계 가해사 없음으로, '제이로 항 조' 주장 가능하다.

② 또한, 허위주조 용서증서 이어서 '제이로 항 11호' 주장  
가능하다. ③ 적용하다.

㉠ 제성 보충성 반하느리 3

(1) 보충성 의미

상호에 대해 주장했거나, 같은도 주장 안 한 경우, 제성 조  
제이 못한다 (제 451조 1항 단서)

(2) 보충성 청구 취소됨

상호한 때 제청사유 없다면, 상호 제기하기 하려는 취지이다.

(3) 추단항소다의 보충성 논의

1) 추단항소 안한 것의 여부

① 판결이 추단항소 상충처분 권형의 책임부수 없는 사유가 있고, ②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래했다.

② 또한, 판결문을 해영할 수 있을 전인 2020. 3.19부터 23내에 할 수 있었음에도 안했다.

2) 취소됨

보충성 청구로 볼 때, 추단항소의 제청으로 별개 독립된 제청이고, 제청 선택했다면 제청 기간 내기, 추단항소 선택했다면 추단항소 기간 내기 제기하면 된다.

(4) 사안

① 따라서, 추단항소 안했어도, 이로 인해 <sup>보충성 변칙적</sup> 부당하다면 물론 없다.

② 따라서, 제청 보충성기도 변칙적 아니다.

9

결론 O.T

적용하다.

## &lt;문제 4&gt;

12.

I. 실습(1)

1. 판권쟁쟁 대위

판권이 잘못된 계산 등 포함성 잘못 유무에 분명할 때

각권으로 또는 승인이 따라 정정권행 할 수 있다 (예 12)

2. 정정 요건

(1) 포함성 잘못이 있는 것

① 포함성 잘못 이기는 하면, 권, 이유, 법원 표시 등 불분한

정정된다. ② 다만, 판권 내용이나 권리, 관련 유무 등을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잘못' 유무에 분명할 것

이 때, 잘못은 법원의 판권이 당사자의 잘못이든  
무방하게 인정된다.

(3) 분명한 잘못 유무에 관한 방법

예를 들면 소송 전라정이 제출된 자료 본인 아래,

판권 신고 권 후의 제출된 자료가 의해 정정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러한 자료 광항하여

판권이 분명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한다. 이때,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른 가리나 절차상 관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정정 권리

각권 또는 정정권을 할 수 있다 (예 12항)

4. 사안



1) 도출상 하해 리가 작성했는데, K가 명목 잘못 판명하여  
 하해리항기 甲 부분 명목이 1287m<sup>2</sup>, 2부분 명목이  
 1511m<sup>2</sup>로 잘못 표기했다. ② K로 인해 표본상  
 잘못이 생겼고 ③ X다 Y여 소용기나 K가 음인  
 출생하여 사인하여, 이러한 표본상 잘못이 명백하여  
 볼 수 있고 ④ 약제가 다른 기회도 있었다.  
 ⑤ 따라서, 정정 해야 함에도 기각결정 한 것은 '부적당하다'  
 옳은 것임

II 7면(2)

6

1) 농장개 - 특정한 지역, 지리

0.5

불복할 수 있는 결정, 영정이 대해 헌법 위반 등이 사영이  
 있는 경우 대법원까지 불복 가능하다 (예 449리)

2) 특정한 작물성

(1) 대상

1) 규정상 불복할 수 있는 것

기피결정, 기각결정은 규정상 불복 불가하다.

2) 영정상 불복할 수 있는 것

① 행정영정 신청 기각 결정은 불복 불가하다. ② 이로 인해  
 해부상 특별항고가 가능하다.

(2) 기간

0.5

재판 2차선 불복이 1주 이내이 해야 한다 (예 449리 2항)

(3) 사안

경정신청 기각 결정은 대상이 되고, 기간 준수 했다면 적법하다.

3. 특정한 이유 제시

(1) 헌법위반

0.5

북돋는 수 없는 결정 명칭이 적법 위반 등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법률 위반, 관례에 반한다는 것도 불가하다.

(2) 헌법위반이 아니

0.5

위헌(은 헌법 외로 '등이 정한 권리가 타사<sup>상당한</sup>의 권한 침해 양한 경우를 말한다.

(3) 행정청신청 기각 불거지 존재하는 헌법위반

1.5

해석체는, 이 결정이 헌법 제111 조 제 2항 제 1호에 위배되는, 행정청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료 제출 의무를 제대로 부여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이 있어야 함이다.

(4) 사안

① 표현상 잘못 있음이 분명하고, 하해 소항 작성된 후에, 국가 관공원 각 사인까지 하여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신청 기각 소명했다.

② 타사, 헌법 외로 등이 정한 권리가 타사<sup>상당한</sup>의 권한 침해 등이, 헌법 위반 사정이 있다.

③ 특정한 이유 제시도 있다.

4. 결론

\* 추가작성의 경우 [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한 할 수 있고, 유가 인정되어 인정될 것이다. 0.5

2  
II (문 13) 1. 특별한 이유 없이  
분류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해 인정되어 분류 허용한다.

2. 재도입 관련 여부 0.5

원래는 형식이 정당한 이유나 있는 경우, 재관 경시해야 한다 (제 44조)

3. 경시성기 기약기간이 아예 재도입인 경우

치하는 특별한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어 분류는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 대해 재도입 관련 인정하는  
것도 취하기 반해 취하는이다 한다.

4. 강도

특별한는 특별한 <sup>이유</sup>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재도입이  
인정되면, 특별한 취하기 반한다.

5. 강도

선제적 강도 한 범의 22로 취하는 것은, 불가하다.

0.5